

이용료의 반환기준(제21조의2 관련)

구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법 제22조 제1항제4호 가목에 해당 하는 경우	가. 이용개시일 전	반환금액 = 이용료 - 위약금(이용료의 1/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
	나. 이용개시일 이후	1)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: $\text{반환금액} = [\text{이용료} - (\text{이용료} \times \frac{\text{이미 경과한기간(일수)}}{\text{계약상이용기간(일수)}})] - \text{위약금}$ 2)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: $\text{반환금액} = [\text{이용료} - (\text{이용료} \times \frac{\text{이미이용한횟수}}{\text{계약상이용횟수}})] - \text{위약금}$
2. 법 제22조 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 하는 경우	가. 이용개시일 전	반환금액 = 이용료 + 위약금
	나. 이용개시일 이후	1)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: $\text{반환금액} = [\text{이용료} - (\text{이용료} \times \frac{\text{이미 경과한기간(일수)}}{\text{계약상이용기간(일수)}})] + \text{위약금}$ 2)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: $\text{반환금액} = [\text{이용료} - (\text{이용료} \times \frac{\text{이미이용한횟수}}{\text{계약상이용횟수}})] + \text{위약금}$

비고

1. "이용개시일"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,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.
2. "이용료"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, 계약금·입회금·가입비·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. 다만,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.